

2020년도 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시행 공고

- ※ 응시자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 본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주요일정

구 분	일 시
필기시험 원서접수	• (공통) 2020. 6. 4(목) 09:00 ~ 6.12(금) 18:00
자격요건 서류제출	• 2급 전문 : 2020. 6. 4(목) 09:00 ~ 6.12(금) 18:00 [우편제출] • 2급 생활, 2급 장애인, 유소년, 노인 : 해당 없음
자격요건 서류심사	• 2급 전문 : 2020. 6. 4(목) ~ 6.19(금)
응시수수료 납부	• 2급 전문 : 2020. 6. 4(목) 09:00 ~ 6.22(월) ※ 6.22(월) 24:00 또는 해당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전까지 • 2급 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 : 2020. 6. 4(목) 09:00 ~ 6.12(금) ※ 6.12(금) 24:00 또는 해당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 전까지
필기시험	• (공통) 2020. 7. 4(토) 09:30(입실) ~ 11:40 ※ 2급 장애인 특별과정 응시자(1과목만 실시)의 경우 09:30(입실)~10:20
최종 합격자 발표	• (공통) 2020. 7.23(목)

2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중요

□ 응시제한 대상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1. 코로나19 확진환자	※ 시험일 기준 ※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지침을 따름
2. 의사환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	
4. 격리대상자(자가격리대상자 포함)	

- * 확진환자 접촉후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기저질환자, 노약자, 임산부 등은 시험 응시 자제를 적극 권고합니다.

□ 응시자 협조사항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SMS 등을 통해 응시자 협조사항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모든 응시자는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반드시 착용 후 입장
 - 시험장(실) 입실 전·후, 시험시간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시험장(실) 입장 불허 및 시험 응시 불가
-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
 - 입장 시 체온 측정(발열 체크)을 실시하며, 고열(37.5°C↑),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열 체크 등으로 입장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험장에 여유 있게 도착 요망 (08:00부터 입장 가능, 수험생은 09:30까지 고사실(교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함)
 - 주 출입구에서 손 소독제로 반드시 손 소독 후 입실
 - 개인위생을 위해 손 씻기 철저, 기침예절 준수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퇴실 조치
 - 시험장 관할 보건소 통보 및 선별 진료소 방문 연계 등 조치
- 응시자 이외의 외부인의 경우 시험장 출입 불가

3 필기시험 원서접수

□ 응시자격요건

구 분		응시자격 요건
2급 전문	공통	○ 나이 : 만 18세 이상(2002년 7월 4일 이전 출생한 사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	○ 2020년 7월 4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 경력이 있는 사람 ○ 2020년 7월 4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 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 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주1)}
	사람	○ 2020년 7월 4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 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 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주1)}

주1)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1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최종 불합격(필기 시험 및 실기·구술시험 및 연수이수 합격 취소,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구 분		응시자격 요건
2급 전문	요건중 하나를 갖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7월 4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주1)} ○ 2020년 7월 4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주2)}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주2)}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분야 학사 ○ 2020년 7월 4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주2)}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주2)}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 이상 ○ 2020년 7월 4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주2)}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주2)}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2급 생활	○ 나이 : 만 18세 이상(2002년 7월 4일 이전 출생한 사람)
2급 장애인	공통	○ 나이 : 만 18세 이상(2002년 7월 4일 이전 출생한 사람)
	(특별 과정) 요건중 하나를 갖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7월 4일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주3)} ○ 2020년 7월 4일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주3)} ○ 2020년 7월 4일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주3)}
유소년	○ 나이 : 만 18세 이상(2002년 7월 4일 이전 출생한 사람)	
노인	○ 나이 : 만 18세 이상(2002년 7월 4일 이전 출생한 사람)	

주1)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1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최종 불합격(필기 시험 및 실기·구술시험 및 연수이수 합격 취소,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주2) 제1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3)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과정 : 필기 1과목(특수체육론)만 실시

- 접수기간 : 6. 4(목) 09:00 ~ 6.12(금) 18:00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원서접수자의 경우 원서접수 후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④응시자격요건 서류제출 참조)
 - ※ 2급 생활, 2급 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원서접수자의 경우 원서접수 후 응시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http://www.insports.or.kr>)
 - 지원서 작성
 - 접수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필기 ⇒ (좌측메뉴)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선택 ⇒ 응시 지역 선택 ⇒ 신청내용 입력 ⇒ '필기접수신청' 클릭
 - 해당 응시요건 선택(해당사항 선택), 증명사진 파일 첨부, 휴대전화번호 입력
 - ※ 반드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입력(잘못된 번호 입력으로 인해 제출서류 보완 등 각종 안내 수신 불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 증명사진 파일 첨부
 - 증명사진(6개월 이내 촬영)은 파일(bmp, gif, png, jpg파일 모두 가능)로 첨부
 - 사진은 최종 합격 후 체육지도사 자격증에 인쇄되오니 반드시 증명사진(3x4)으로 첨부 요망
 - 흑백사진, 측면사진, 배경이 나타나는 사진, 모자착용 사진, 기타 얼굴 인식이 안 되는 사진 등 불가
 - 파일 첨부 및 등록버튼 클릭 후 접수확인 화면에서 사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 다시 첨부해야 하며, 접수기간 중 '마이페이지-사진관리'에서 수정 가능
- 접수마감 : 응시지역 선착순 마감
 - **코로나19로 고사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응시를 원하는 지역(권역별 임시고사장)으로 원서를 접수하며, 6월 24일(수)에 고사장을 배정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하여 고사장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접수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과 감염병 확산 등 발생 시 일부 지역의 고사장이 폐쇄될 수 있으며, 고사장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응시 편의제공
 - 적용대상 : 체육지도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및 이와 동등한 장애가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등
 - 자격종류별 제출기한 내 장애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필기 ⇒ (좌측메뉴)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선택 ⇒ '장애사항' 클릭 ⇒ 장애사항(장애정도/등급) 및 장애요청사항(편의제공 요청사항) 선택
 - 제출서류 : 편의제공 신청서(홈페이지-자료실) 및 대상별 제출서류

대 상	제출서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반드시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의사진단(소견)서 1부(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의사진단(소견서) 1부(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위와 동등한 장애가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포함)	•의료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원본 1부

○ 편의제공 내용

장애유형	편의제공 내용
시각장애인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시험시간 연장(1.5배~2배), 청수법(문제지 대독 및 답안지 대필), 독서확대기, 확대문제지 이용 가능 등
뇌병변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1.5배),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이용 가능 등
상지지체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1.5배, 중증에 한함), 확대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이용 가능 등
청각, 심장 장애인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신장 장애인	화장실 이용시간 및 투석시간 시험시간에서 제외
장루·요루 장애인, 임신부	화장실 이용시간 시험시간에서 제외 (임신부는 의사 소견서 제출)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인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포함)

※ 장애유형별 세부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장애인 편의제공 안내문 참조

- 제출기한 : 6. 4(목) 09:00 ~ 6.12(금) 18:00(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홈페이지 내 등록 또는 등기우편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처
 - 홈페이지 등록 시 : <http://www.insports.or.kr>에서 '접수확인' 페이지 내 등록
 - 등기우편 제출 시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체육지도자팀
- ※ 홈페이지 접수 후 장애관련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편의제공 가능
- ※ 편의제공 신청자에 대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개별 연락(문자 등) 예정

4 응시자격요건 서류제출

- 제출대상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원서접수자
 - ※ 2급 전문 '17년~'19년 필기 서류심사 합격자는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개별 아이디 접속 후 제출여부 반드시 확인
 - 단 '17년~19년 서류심사 합격 후 원수접수 취소 등으로 합격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함(홈페이지에서 제출여부 반드시 확인)
 - 확인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필기 ⇒ (좌측메뉴)'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서류심사 결과' 클릭
- 제출기간 : 6. 4(목) 09:00 ~ 6.12(금) 18:00(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반드시 우편제출, 방문제출 불가(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
 -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자격요건 관련 제반 증빙서류(원본)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팩스·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처 :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체육지도자팀
필기시험 서류심사 담당자 앞
(도착장소에 체육지도자팀 필히 기재, 미기재 시 도착이 안 될 수 있음)

※ **서류봉투 좌측 하단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표기**

- ※ 응시자격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수수료 납부가 불가하며, 제출처 착오 등으로 인한 서류 미도달 및 응시 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임
-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서류심사 기간 이후 응시자격요건 변경 불가

□ **서류심사 합격 여부 및 서류 보완제출 안내**

- 확인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필기 ⇒ (좌측메뉴)'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서류심사 결과' 클릭(조회기간 : 6. 4 ~ 6.22)
- ※ **서류심사 합격자는 응시수수료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요건별 제출서류**

구 분	응시자격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2급 전문	① 2020년 7월 4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① 경기실적증명서(4년 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4년 이상)
	② 2020년 7월 4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 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주1)}	① 체육분야 학사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증명서 제출 시 2021.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합격 취소)
	③ 2020년 7월 4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 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주1)}	①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졸업예정자) ② 경기실적증명서(2년 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 이상) * 졸업예정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증명서 제출 시 2021.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합격 취소)
	④ 2020년 7월 4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 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주1)}	①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②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 참가확인서 * 졸업예정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증명서 제출 시 2021.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합격 취소) * 경기경력 증명서류는 체육분야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제출

구 분	응시자격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2급 전문	⑤ 2020년 7월 4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주2)} 에 해당 하는 학교 (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 ^{주2)} 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 분야 학사	①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학사 졸업증명서 ※ 외국증명서류는 번역공증서 제출
	⑥ 2020년 7월 4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주2)} 에 해당 하는 학교 (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 ^{주2)} 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 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 이상	①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② 경기실적증명서(2년 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 이상) ※ 외국증명서류는 번역공증서 제출
	⑦ 2020년 7월 4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주2)} 에 해당 하는 학교 (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 ^{주2)} 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 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①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②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 참가확인서 ※ 외국증명서류는 번역공증서 제출 * 경기경력 증명서류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제출

주1)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1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를 제출해야함. 개인의 사정 등으로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미제출 시 최종 불합격 처리(필기시험 및 실기·구술시험 및 연수이수 합격 취소, 응시 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주2) 제1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만 인정하며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로 제출 가능
- ※ 경기실적, 경력, 학위 등에 대한 상세한 인정요건(범위) 및 증빙서류, 각종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확인 방법 》

- 인정요건 등 : 홈페이지 ⇒ 시험안내 ⇒ 자격제도안내 ⇒ (좌측메뉴)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양식 :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자료실
- 해외발급 증명서의 경우 번역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수수료 납부

- 납부대상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서류심사 합격자 및 2급 생활, 2급 장애인, 청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원서접수자
 - ※ 2급 전문 서류심사 결과 확인 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된 전화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문자 수신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과는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서류심사 합격 여부 확인 후 납부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급 전문 : **6. 4(목) 09:00 ~ 6.22(월) 24:00 또는 해당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 전까지**
 - 2급 생활장애인 청소년 노인 : **6. 4(목) 09:00 ~ 6.12(금) 24:00 또는 해당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 전까지**
 - ※ **결제대행 서비스의 오류 가능성 등 감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필기 ⇒ (좌측메뉴)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선택 ⇒ '응시수수료 납부' 클릭
 - 결제방법 : 가상계좌, 카드결제, 계좌이체(예금주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 **납부기간 내 응시수수료 미납 시 필기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며 이후 추가 접수 없음**
 - 가상계좌 입금 시 일부 노후화된 ATM 기기를 통한 입금이 되지 않을 때,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 계좌 입금 시 반드시 본인의 응시수수료만 입금하여야 하며, 타인의 응시수수료를 함께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
- 응시수수료 : 18,000원
- 환불규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응시 자제를 적극 권고하며, 감염우려로 인한 취소자를 위해 필기시험일 1일 전(7월 3일까지) 취소·환불 요청 시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환불신청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필기 ⇒ (좌측메뉴) '응시한 자격' 선택 ⇒ '접수취소 및 환불' ⇒ '응시수수료 환불' 클릭 ⇒ 접수취소
 - 환불시기 : 취소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입금 예정
 - ※ ①검정기관이 지정한 가족의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조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에 한함) 또는 ②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③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응시 불가 시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본 공고문 '증빙서류 제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 (필기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가족 등 사망 시 : 환불신청서, 본인과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및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 환불신청서,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및 본인 신분증 사본 ※ 입원기간 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한 응시 제한자(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 우려자 및 그 직계가족,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등) : 환불신청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신분증 사본 등 증명서류

6

필기시험

- 일 시 : 7. 4(토) 10:00 ~ 11:40 (09:30까지 입실 완료)
- 장 소 : 별도 홈페이지 공고
- 시험방법 및 과목
 - 문제형식 : 객관식 4지 선다형
 - 시험문항 : 100문항(20문항×5과목)
 -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선택(5과목)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필수(1과목) : 특수체육론 선택(4과목)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필수(1과목) : 유아체육론 선택(4과목)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노인스포츠지도사	필수(1과목) : 노인체육론 선택(4과목)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 2급 생활/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2급 장애인 특별과정)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만 실시(시험시간 20분)

- 시험시간 * 2급 장애인 특별과정 : 시험응시 10:00~10:20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입실완료	08:00~09:30	응시생 고사실 입실	답안지는 시험종료 후 전량 회수
시험안내	09:30~10:00	유의사항 설명, 문제지 배부	
시 험*	10:00~11:40	응 시	

※ 09:30까지 해당 고사실(교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발열 체크 등 입장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 있게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제범위(기준) : 홈페이지 참조
- 문제지 및 정답가안 공개 : 7. 4(토) 15:00
 - 확인방법 : 홈페이지 ⇒ 시험문제/정답 ⇒ '필기시험문제/정답' 클릭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7. 4(토) 18:00 ~ 7. 7(화) 18: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시험문제/정답 ⇒ '이의신청' 클릭
 - ※ 이의신청 문제는 정답심사(홈페이지 이의신청 기간 중 접수된 이의신청 문제만 정답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정답을 확정하며, 회신은 최종 정답 발표로 같음
- 최종 정답 발표 : 7.23(목)

7

합격자 발표

- 합격기준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 * 2급 생활/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필기시험 특수체육론 1과목만 응시)은 총점의 60% 이상 득점
- 합격자 발표 : 7.23(목)
- 답안지 방문열람 : 7.23(목) 09:00 ~ 7.29(수) 18:00
 - 열람방법 : 본인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답안지 열람요청서 작성)
 - 열람장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체육지도자팀
 - ※ 점심시간(12:00 ~ 13:00) 및 공휴일(토·일요일 등) 제외

8

유의사항

- 응시자 필수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수험표 출력 : 추후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수험표는 본인이 직접 출력해 오셔야 합니다.
 - 출력방법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필기 ⇒ (좌측메뉴) 원서접수한 자격 선택 ⇒ '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 ⇒ '수험표' 클릭
 -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경찰청장 발급), 여권(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중 택1
 - ※ 모든 신분증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 ※ 응시자의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원서접수 서류와 다른 경우,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확인 후 고사장 입실이 가능합니다. 당일 주민등록초본 미지참 시, 7일 이내(7.10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02-410-1177)
 - 필기구 :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미개봉 상품 사용 적극 권장)
 - ※ 위 필기구 이외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농도 등 표기상태가 불량한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 장애인 응시 편의제공 * 홈페이지 등록 및 기한 내 제출서류 필수 제출
 - 필기시험 응시 관련 장애인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제공 신청자에 대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개별 연락(문자 등)할 예정입니다(대한장애인체육회 : 031-526-9448/9449).
- 휴대전화 문자 안내서비스
 - 응시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휴대전화 문자 안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된 전화번호 오류 등으로 문자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자안내 서비스 수신 불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문자 수신 여부와는 별도로 홈페이지 공고, 서류심사 합격여부, 응시수수료 납부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필기시험 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조회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에 의거 각 자격종류별 최종 합격에 따른 자격증 발급 전 결격사유 조회(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며, 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유의사항 : 불임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 답안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 (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모든 기재사항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사용금지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농도 등 표기상태가 불량한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중복답안을 기재하거나 잘못된 표기시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 ⊕ ⊘ ⊙
- 연필, 샤프펜, 적색펜 등으로 예비마킹을 한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인식되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농도가 열은 사인펜으로 답안을 표기한 경우에도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답안지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표기하여야 채점이 되며, 필수기재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0”점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 등 답안지 작성 관련사항 별도 공지)
 - 수험번호, 성명, 문제유형,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작성 오류로 “0점” 처리 주요사례]

- 검정색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빨간색 사인펜, 볼펜, 연필 등)를 사용한 경우
- 연필, 볼펜 등 다른 필기구로 답항을 표기한 후에 검정색 수성사인펜으로 덧칠한 경우
- 답란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만 표기한 경우
- 하나의 문제에 2개 이상의 답항 표기(점을 찍거나 연필, 볼펜 등으로 가답안 체크 후에 제대로 지우지 않은 경우 등)
- 오래된 수성사인펜 사용 등으로 농도가 열게 표기된 경우
- 답란의 테두리를 벗어나 너무 크거나 넓게 표기한 경우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면서 불완전하게 처리하거나 수정테이프가 벗겨진 경우
-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 오물 등으로 훼손한 경우

<수험자 주요 실수 유형>

번호	수험생 주요 실수 유형			판독 및 처리결과
< 답항 미판독 >: 득점 불인정				
1	미지정펜으로 답항을 표기한 경우	연필	① ② ③ ④	해당문항 미판독
		볼펜	① ② ③ ④	
		형광펜	① ② ③ ④	
		적색볼펜	① ② ③ ④	
2	잘못된 방식으로 답항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표기한 경우	점	① ② ③ ④	
		사선	① ② ③ ④	
		√	① ② ③ ④	
3	답항의 숫자가 보일 정도로 농도가 얇은 사인펜으로 표기한 경우		① ② ③ ④	
4	예비마킹을 하고, 다른 답항에 정답 표기를 한 경우		① ② ③ ④	2.4번 중복판독
			① ② ③ ④	3.4번 중복판독
			① ② ③ ④	2.3번 중복판독
5	부주의한 실수로 특정 문항에 두 개의 답항을 표기한 경우		① ② ③ ④	3.4번 중복판독
			① ② ③ ④	아래 문항 1.3번 중복판독
			① ② ③ ④	위 문항 2.4번 중복판독
6	답항을 너무 크게 칠해 다른 답항에 번진 경우		① ② ③ ④	아래 문항 1.3번 중복판독
7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면서 불완전하게 처리한 경우		① ② ③ ④	1.3번 중복판독
			① ② ③ ④	1.3번 중복판독

- OMR 답안지에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에 손을 들어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 감독관이 수정테이프로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해 줍니다.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5분전 까지만 가능하며, 답안지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답안 표기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를 교체할 경우 오기 답안지에는 반드시 "X표"로 오기 답안지임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답안지가 제출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답안지 기재사항 및 답항의 표기 누락 또는 오류 표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오니 답안지 기재사항 및 답항 표기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모범사례>

자격·등급: 1급 생활

고사장: 한겨레

성명: 홍기동

유형: A

수험번호: > 0 | 8 0 4 0 7

생년월일: 1 8 0 4 0 7

감독 확인: (서명 또는 날인) 결시

*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사인펜만 사용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OMR 답안지				
과목명: 운동상해				
번호	과목코드	번호	1	2
0	000	1	0	0
1	001	2	0	0
2	002	3	0	0
3	003	4	0	0
4	004	5	0	0
5	005	6	0	0
6	006	7	0	0
7	007	8	0	0
8	008	9	0	0
9	009	10	0	0

과목명: 처방약재평가론				
번호	과목코드	번호	1	2
0	000	1	0	0
1	001	2	0	0
2	002	3	0	0
3	003	4	0	0
4	004	5	0	0
5	005	6	0	0
6	006	7	0	0
7	007	8	0	0
8	008	9	0	0
9	009	10	0	0

과목명: 트레이닝론				
번호	과목코드	번호	1	2
0	000	1	0	0
1	001	2	0	0
2	002	3	0	0
3	003	4	0	0
4	004	5	0	0
5	005	6	0	0
6	006	7	0	0
7	007	8	0	0
8	008	9	0	0
9	009	10	0	0

과목명: 건강교육론				
번호	과목코드	번호	1	2
0	000	1	0	0
1	001	2	0	0
2	002	3	0	0
3	003	4	0	0
4	004	5	0	0
5	005	6	0	0
6	006	7	0	0
7	007	8	0	0
8	008	9	0	0
9	009	10	0	0

과목명:				
번호	과목코드	번호	1	2
0	000	1	0	0
1	001	2	0	0
2	002	3	0	0
3	003	4	0	0
4	004	5	0	0
5	005	6	0	0
6	006	7	0	0
7	007	8	0	0
8	008	9	0	0
9	009	10	0	0

-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 오물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기퇴실 안내
 - 답안작성이 끝난 응시자는 11:20 이후 퇴실 가능합니다.
 - 퇴실 시 답안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본인의 소지품을 챙겨 조용히 퇴실합니다. 조기 퇴실 시 대화 등 다른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퇴실 이후에는 시험 종료 전까지 재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 퇴실 시 문제지는 본인이 지참하고 가도 됩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허위작성·위변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정확한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고사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입실시간(09:30)까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고사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장 발급),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만 허용
 - ※ 응시자의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원서접수 서류와 다른 경우,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확인 후 고사장 입실이 가능합니다. 당일 주민등록초본 미지참 시, 7일 이내(7.10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02-410-1177)
- 중도퇴실한 응시자는 재입실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에게 배정된 고사장이 아닌 다른 고사장이나 지정된 고사실 좌석 이외의 장소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고사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고사실 내에 시계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참고해서는 안됩니다.
 -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 또는 송·수신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과도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등 수험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저장장치가 없는 일반 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응시자(응시원서 접수 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수수료 환불 불가)
- 시험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시험장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에 따라 향후 3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시험자와 해당 응시자는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카드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시험문제 및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7.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카드를 작성하거나 답변하는 행위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등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
11.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 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사용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고사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5.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해당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예 : 휴대전화)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상황에서 해당 기기의 벨이 울린 경우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예 : 휴대전화)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격리)한 상황에서 해당 기기의 벨이 울릴 경우 1회 경고하고 이후 반복 시 퇴실
 7.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안내 방송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9. 기타 감독지시 불이행, 지침위반 등으로 퇴장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행위
-